

## 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다이나믹코리아50 연금저축 증권투자신탁[주식혼합]

□ 변경 사항: ①3년 수익률 변동성 변동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 
[5등급(낮은 위험) → 4등급(보통 위험)]

②제7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
③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효력발생일: 2020. 6. 2.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정사유	정 정 전	정 정 후
표지			
-	투자위험등급 변경	5 등급(낮은 위험)	<u>4 등급(보통 위험)</u>
요약정보			
투자위험등급	투자위험등급 변경	5 등급(낮은 위험)	<u>4 등급(보통 위험)</u>
투자비용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동종유형 보수 기준일 기재		<u>2020.4.29 기준</u>  <u>2020.3.31 기준</u>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 수 익률)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	<u>2020.4.29 기준</u>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	<u>2020.4.30 기준</u>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	<u>2020.4.30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투자기 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	<u>2020.4.30 기준</u>
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3년 수익률 변동성 변동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	표준편차 : 4.65% 투자위험등급 : 5 등급(낮은 위험)	<u>표준편차 : 7.97%</u> <u>투자위험등급 : 4 등급(보통 위험)</u>
	위험등급 변경 내역	-	<u>2020.6.2. : 5 등급 → 4 등급</u> <u>최근 결산일 기준 3년 수익률 변동성이 5%초과 ~10%이하 구간에 해당되어 5 등급에서 4 등급으로 변경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	<u>2020.4.29 기준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2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	<u>납입요건</u> <u>가입기간 5년 이상, <b>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</b></u> <u>가. 연 1,800만원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</u> <u>나.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(이하 “전환금액”)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</u>
		공제제도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	공제제도 <b>[별첨]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중 공제제도 참조</b>

- 종합소득금액 4,000 만  
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 
5,500 만원 이하(근로소득  
만 있는 경우) 일 경우  
15%에 해당하는 금액을  
세액공제

-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 
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
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  
만원 초과)하는 경우 연간  
저축금액 중 300 만원 한  
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  
액을 세액공제

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 
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 
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  
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  
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  
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  
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  
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  
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 
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  
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  
외됩니다.

※ 지방소득세 별도

---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---

1. 재무정보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 - 따른 갱신	<u>2020.04.29 기준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 - 따른 갱신	<u>2020.04.29 기준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	제 7 기 재무제표 확정에 - 따른 갱신	<u>2020.04.29 기준</u>

---
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---

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최근 기준으로 기재      2020. 3. 31 기준      2020. 4. 30 기준  
 사항

**[별첨]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중 공제제도**

종합소득금액 (총 급여액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포함)	세액공제율
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400만원	600만원	15%
1억원 이하 (1.2억원 이하)	(700만원)	(900만원)	
1억원 초과 (1.2억원 초과)	300만원 (700만원)		12%

※ 지방소득세 별도

※ 50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적용기한 및 적용제외 대상

- 적용시기 : 2020.1.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- 적용기한 : 2022. 12. 31.

- 적용제외 대상 :

① 종합소득금액 1억원 또는 총급여액 1.2억원 초과자

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(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)